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으로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피해자가 열람·등사 신청시 사용할 서식 및 불허가(조건부 허가)·사용 목적 제한시 통지하는 서식을 신설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의 통지서 교부 및 보존의무를 규정(안 제172조의2 및 별지 제220호의2, 제222호의2 각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2조의2(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등) ①

법 제29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가 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의2 서식의 열람·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법 제294조의5제2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94조의5제3항에 따라 서류등의 사용 목적을 제한 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의2 서식의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분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며,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별지 제2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열람·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 과의 관계	☐ 피해자 본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 피해자 본인 또는 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의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사 건	사건번호		피고인		
	년 월 일 호		외 명		
죄 명					
신청사유	☐ 피해자 등의 해당 사건 진술권 행사 ☐ 피해자 등의 관련사건 증거제출 등 권리구제 (관련 사건번호 및 사건 내용 :)				
신청내용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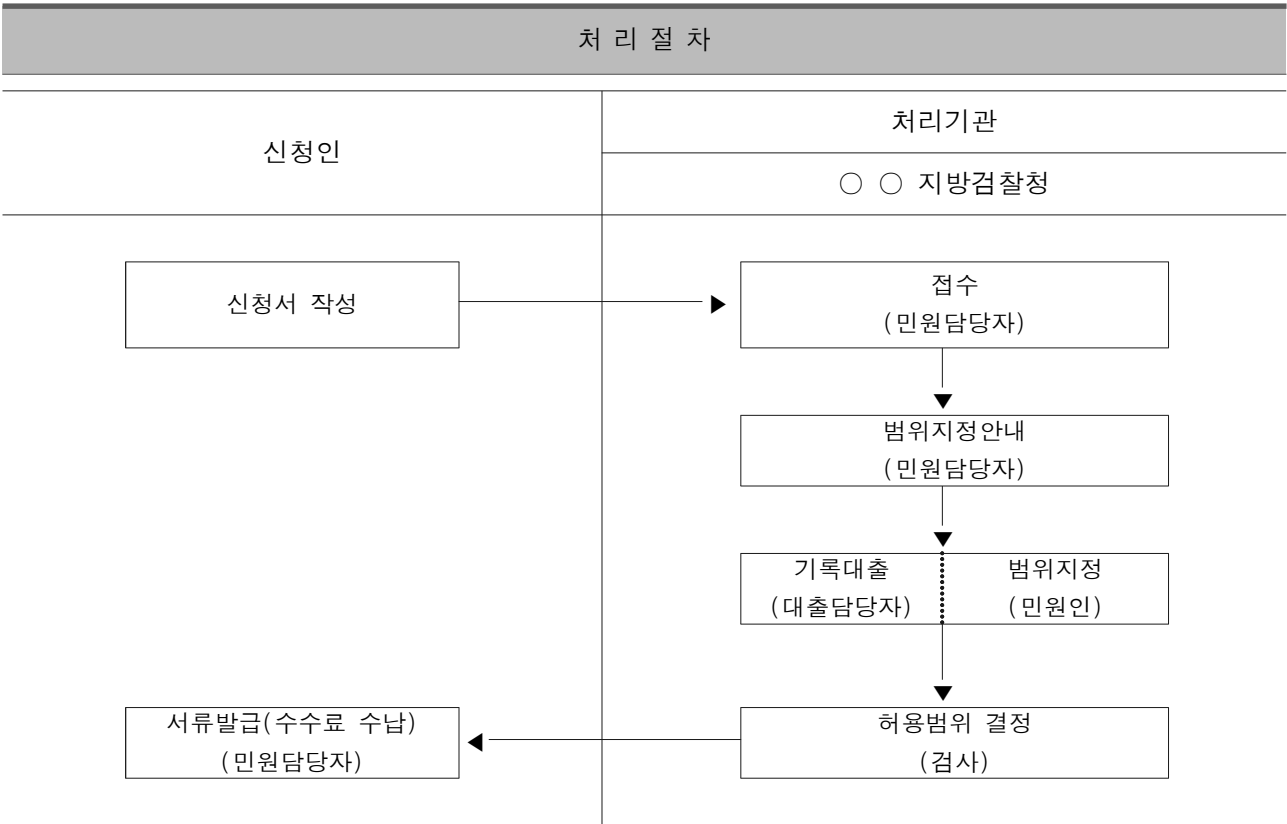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검 사 결 정	허 가	불 허 가	목적 제한 등
	㉠	㉠	㉠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목적 제한(또는 조건) 내용

순번	서류 등의 목록	허가여부			비고
		허 가	거 부	목적 제한 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비고란에 기재

210mm × 297mm(백상지 (80g/㎡))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4항에 따라 귀하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가(조건부허가)·사용 목적 제한을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등의 목록 (별지순번 또는 면수)	열람·등사의 불허가(조건부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의 사유
	신청인의 자격 없음
	신청사유의 소명이 없음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제59조의2제2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제59조의2제3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제59조의2제4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제59조의2제5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제59조의2제6호)
	재판의 상황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기타(이유 :)

210mm×297mm

(신문용지54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2조의2(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등) ① 법 제29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가 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의2 서식의 열람·등사 신청서에 따른다.</u> <u>② 검사는 법 제294조의5제2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94조의5제3항에 따라 서류등의 사용 목적을 제한 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의2 서식의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u>		

등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분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 카드에 첨부하며,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